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허성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847 발의연월일: 2025. 3. 12.

발 의 자:허성무·조계원·권향엽

주철현 · 정진욱 · 박 정

김남근 • 이기헌 • 허 영

김문수 • 박희승 • 박지원

유건영 • 유종오 • 김 유

이광희 • 이병진 • 김동아

박선원 · 오세희 의원

(200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확대하고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

또한, 현행법은 일상생활돌봄서비스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일상생활돌봄서비스를 확대할 의 무를 부과하고 있음. 그러나 현행법은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는 않음.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말기환자이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이 겪는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415호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임종과정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기환자이거나 임종 과정에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이 겪는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0415호 의료・요양 등	법률 제20415호 의료・요양 등
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	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
륟	물
<u><신 설></u>	제18조의2(임종과정지원) 국가와
	지방자치단체는 말기환자이거
	나 임종과정에 있는 통합지원
	대상자 및 그 가족이 겪는 신
	<u>체적・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</u>
	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인간으
	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
	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례에
	따른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
	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
	<u>한다.</u>